

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직(사무출납 및 종합금융상담사) 채용공고

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
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2년 2월 10일

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

- ◆ 모집분야별·지원부점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(동시 공고 중인 특정직 분야는 지원 가능)
※ 중복지원 발견 시 별도 통보 없이 모두 지원 취소 처리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□ 계약직(사무출납 4명, 종합금융상담사 19명) 채용

구 분	모집분야 (직군)	담당업무	운영부점*	채용 인원
계약직	사무출납 (휴직대체)	■ (기본업무) 부점 배정 예산 운영, 지급결의서 작성 및 관리, 업무용 부동산관리 등 ■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므로 육아휴직 특정직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(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직무기술서 참고)	본사	3명
			인천지사	1명
	종합금융 상담사	■ 보금자리론·주택보증·주택연금 등 공사 상품 관련 고객 금융 상담	18개 지사**	19명

*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을 통해 타 부점(타 지역)으로 이동할 수 있음

** 종합금융상담사(계약직) 운영지사 및 지사별 채용인원은 아래 운영지사 참고

□ 육아휴직 대체(사무출납) 운영부점 소재지(공고일 기준)

운영부점	주 소
본 사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부산국제금융센터(문현동)
인천지사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60 (부평동) 현대해상 부평사옥

□ 종합금융상담사 운영부점별 채용인원 및 소재지(공고일 기준)

지 사	채용인원	주 소
서울남부지사	1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, (역삼동, 큰길타워빌딩)
서울북부지사	1	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(상계동) KB금융노원플라자
서울동부지사	1	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(도선동) 코스모타워
경기북부지사	2	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94-3, 재능교육빌딩
서울서부지사	1	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(신도림동) 디큐브시티
인천지사	1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60 (부평동) 현대해상 부평사옥
경기남부지사	1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1 (권선동) 서울보증보험빌딩
경기중부지사	1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
경기동부지사	1	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-1 ICT밸리 SK V1 A동
부산지사	1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9, 한화생명 부산사옥
서부산지사	1	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(괘법동) 송원센터빌딩
대구지사	1	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(덕산동) 삼성금융프라자
울산지사	1	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(달동) 유안타증권빌딩
경북지사	1	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67, 시온빌딩
경남동부지사	1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(중앙동)
대전지사	1	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(둔산동) 신한중앙회
충남지사	1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(불당동)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
전북지사	1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(서신동) KT빌딩
합 계	19	

2. 지원자격

- 연령, 학력, 성별 등 제한 없음
-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예정지(운영부점)에서 근무 가능한 자
- 「채용세칙」 제16조(채용금지자)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

※ 「채용세칙」 제16조(채용금지자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.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지 지나지 아니한 자
1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☐ 「채용세칙」 제23조(합격의 취소)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취소

「채용세칙」 제23조(합격의 취소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.

1.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
2. 채용비리 연루자
3.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
4.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(제출서류)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

3. 채용조건

☐ 고용형태 : 기간제 근로자

☐ 계약기간

○ 서무출납(휴직대체) :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나,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연장할 경우 소정의 평가를 거쳐 재계약 가능

- 본 사 : 입사일(3월 말) ~ 6.30. (약 3개월)

- 인천지사 : 입사일(4월 초) ~ 12.31. (약 9개월)

○ 종합금융상담 : 입사일(4월 초) ~ 11.30. (약 8개월, 재계약 불가)

☐ 근무시간 : 09:00 ~ 18:00(월~금, 주5일)

☐ 급여수준(세전)

- 서무출납(휴직대체) : 월정액급여 205만원
- 종합금융상담사 : 월정액급여 200만원

4. 지원서 접수

☐ 접수기간 : 2022. 2.10(목) ~ **2.24(목) 13:00(오후 1시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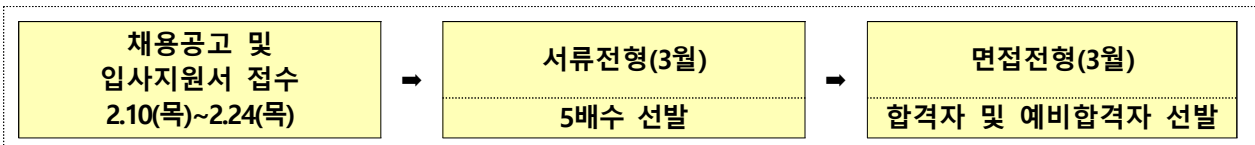
- 마감시간(2.24.(목) 13:00)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**가급적 마감 전날까지 제출**
- ‘임시저장’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‘최종제출’ 처리

☐ (입사지원서)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

☐ (접수방법) 채용홈페이지(<https://hffinance.saramin.co.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
※ 개별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 불가

5. 전형 절차 및 일정

☐ 전형절차 등 개요



※ 전형절차별 일정은 지원자 수 및 전형 추진 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☐ 전형 일정

구 분		일 정
■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		2.10.(목) ~ 2.24.(목)
■ 서류전형		3월 초
■ 면접전형	서무출납	3월(지원부점에 따라 서울·부산에서 대면면접 실시)
	종합금융상담	
■ 입사에정일	서무출납	· 본 사 : 3월 말 · 인천지사 : 4월 초
	종합금융상담	· 4월 초

※ 전형절차별 일정은 지원자 수 및 전형 추진 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6. 우대사항

- ※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**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(우대사항에 체크)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**
- ※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(부적격자) 및 불성실기재자(아래 “8. 전형별 선발인원 등” 정의 참고)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,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% 이내에서만 적용
- ※ **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**
 - “본인”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 입사지원 하실 것
 -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,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**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**하니 주의하시기 바람

□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, 보훈대상자*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(각 전형별)
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보훈 가점 적용은 적용하지 않고, 동점자 처리 시 보훈대상자 우대 비율(5~10%)에 따라 우대

구 분	가 점	세부가점대상
장애인	5%	·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
	10%	·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중증장애인
사회적 배려 대상자	5%	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(본인 또는 자녀)
		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		·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		·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호대상자(새터민)

□ 우대사항은 증빙서류*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, **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**(면접 응시 불가)

*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, 7. 제출 서류 참조

7. 제출서류

- ※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사실과 다르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입사지원 또는 합격을 취소 (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)
- ※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**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**에 한하여 인정 가능 ('22.2.24. 이후, 당일 포함, 재발급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)
- ※ **서류전형 합격자가 기한 내* 요구서류 미제출 시**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하여, **불합격 처리** (면접전형 응시 불가)

*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~4일 이내 (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)

□ 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(해당자에 한함)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**온라인으로** 제출하고, 최종합격 시 **실물 제출**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)
- 우대사항 관련 제출서류
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
 - 중증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
 - 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
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
 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
 - 가족관계증명서
 -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
 -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 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
 -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
 - 새터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
 - 보훈대상자* :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

* 가점 미적용(단, 동점자 처리 시에 우대)

□ 기타 증빙서류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(해당자에 한함)

-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등 제출(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)

8. 전형별 선발인원 등

☐ 서류전형

-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
- 부적격자(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, 이하 같음)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*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

* [불성실 기재자]

-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
-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
-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%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및 기타 위 3가지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

- 경쟁률 5배수 초과 :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
- 경쟁률 5배수 이하 :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

☐ 면접전형(지원부점에 따라 서울 또는 부산에서 실시, 소정의 면접비 지급)

- 인재상(창조인, 전문인, 화합인) 부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
-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(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)를 선발하되, 부적격자(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) 제외

☐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·신체조건·학력·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나 임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를 예방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

※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부의 「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」에서 기재부장관상(19년), 교육부장관상(20년), 고용노동부장관상(21년) 수상

9. 기타사항

☐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&A를 이용(<https://hffinance.saramin.co.kr>)

☐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□ 채용비리 관련

-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
-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
-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, 당사 「채용세칙」 제35조(피해자 구제방안)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

구 분	피해자 구제 방안
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	－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,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(예비)합격자 지위부여
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	－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,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－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

□ 동점자 처리기준

- ①보훈대상자 > ②장애인 > ③사회적 배려 대상자 > ④직전 전형단계 성적순*으로 선발
- *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“직무능력” 항목 득점 순
-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(①~③ 중 동일한 가점항목이 적용되는 동점자의 경우에는 가점 비율이 높은 순)

□ 본 채용공고의 일정 관련 사항은 코로나-19 확산 상황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

-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는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음
-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확인 하며, 신분증 미 지참 시 응시 불가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첨부한 “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”를 작성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 가능(단,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삭제 처리)